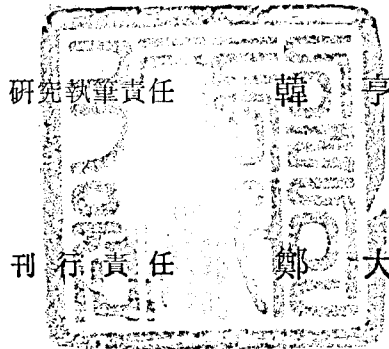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研究

北傀와 中·蘇와의 條約體制에 關한 分析

{ 북傀각각20세기
 북한정국20세기
 " 1022 "
 북방20세기20세기



研究執筆責任

韓 亨 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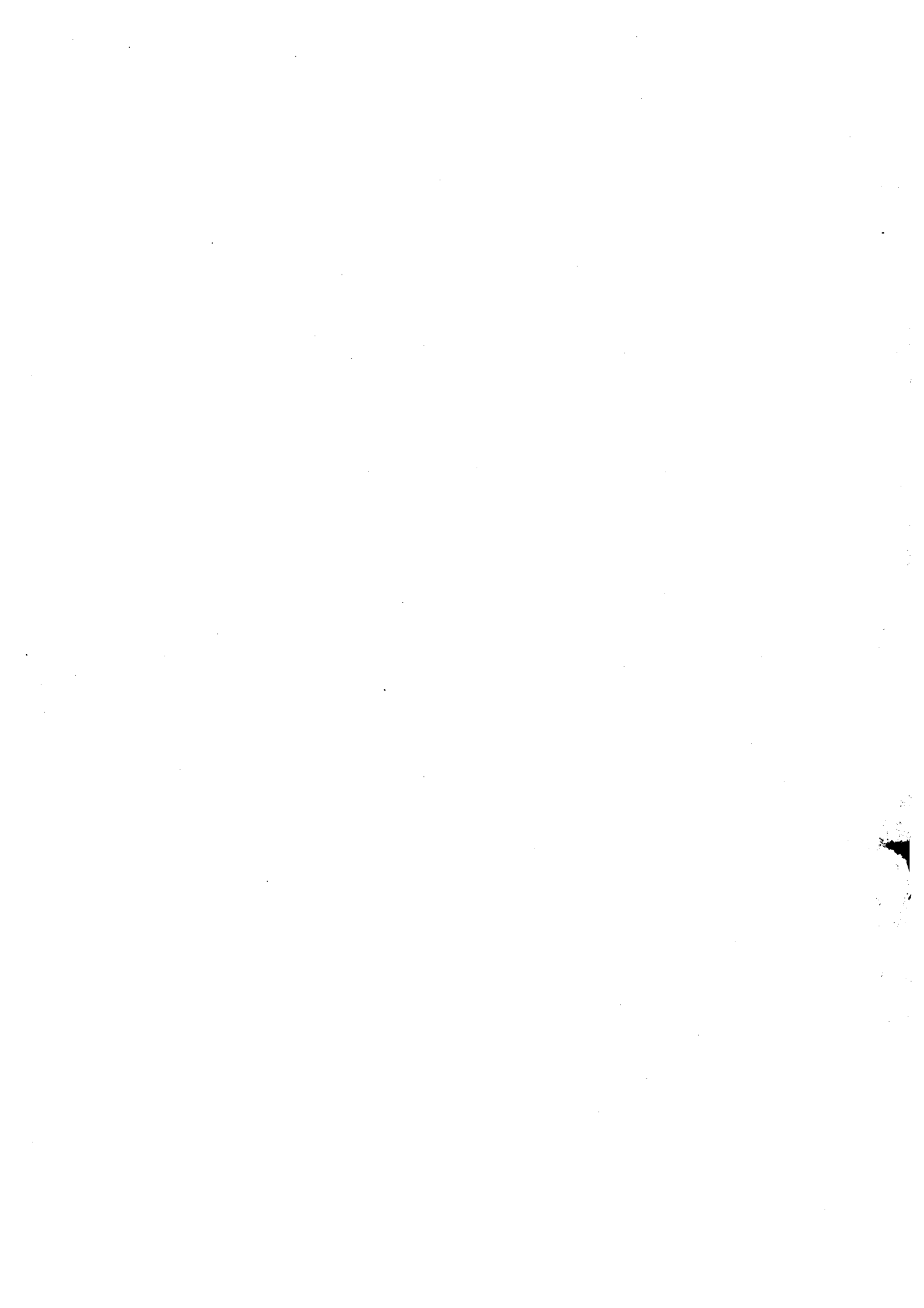
(明知大學校)

刊行責任

鄭 大 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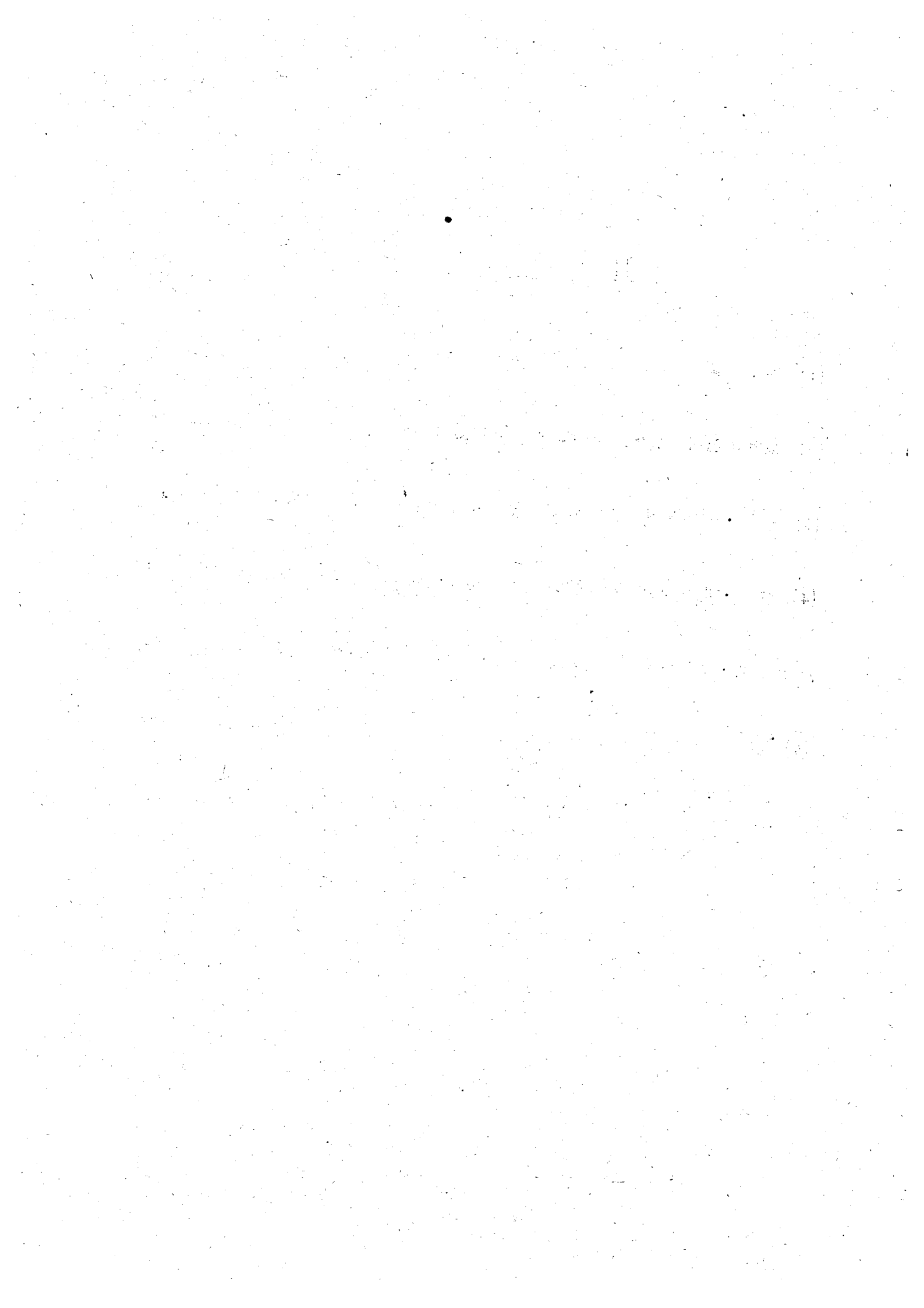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序 論	3
(2) 東歐羅巴에 있어서 蘇聯과 東歐諸國間에 체결된 條約體制	5
(3) 蘇聯・中共間의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	44
(4) 蘇聯・北傀間의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	49
(5) 中共・北傀間의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	54
(6) 結 論	56



(1) 序 論

1961年 7月 6日字로 蘇聯은 北傀와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에 調印함으로써 兩者間에 効力이 發生하게 되는 國際法上의 雙務條約을 締結하였다. 이를 契機로 하여 北傀는 同月 11日字로 中共과도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北傀의 友邦國인 蘇聯과 中共을 締約國으로 하는 雙務條約의 成立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雙務條約은 前文 또는 本文에서 各기 極東과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의 保障을 目的으로 한다고 明示하고 있으나 條約의 名稱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一種의 軍事防衛條約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北傀와 中·蘇間에 締結된 이러한 雙務條約은 그것 나름대로는 背景과 法的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條約의 成立을 낳게 한 原型은 이미 第2次 世界大戰중 蘇聯이 東歐圈諸國에 대해 hegemon을 掌握하기 위한 手段으로 個別的으로 締結한 雙務條約에서 찾아 볼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北傀와 中·蘇間에 締結된 條約體制를 考察하기에 앞서 우선 東歐에 있어서 蘇聯과 東歐圈諸國間에

締結된 雙務的 防衛條約에 관한 條約體制부터 살펴 볼 必要가 있겠다.

(2) 東歐 羅巴에 있어서 蘇聯과 東歐 諸國間에 締結된 條約體制

第2次 大戰後에 成立된 共產主義的 國家制度는 1956年 以來 그의 單獨支配的인 性格을 喪失하고 말았다. 中·蘇間의 紛爭으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蘇聯에 의한 共產主義的 單獨支配制度는 思想的인 結束을 依住로 하는 緩和된 國家結合의 形態로 變質되었다.

“社會主義的 國家”와 아직까지 執權하지 못하고 있는 共產主義 分子까지 포함하여 指稱되는 “社會主義的 世界制度”의 範圍內에서 中·蘇의 支配的 要求는 “프로레타리아·社會主義的 國際主義”를 부르짖고 있다.¹⁾ 이 主義에 대한 兩國家의 解釋은 서로 相馳된다. 蘇聯의 解釋에 의하면 “社會主義的 陣營”은 물론 共產主義的 世界革命은 蘇聯이 中心이 되어 嚴格하게 實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中共의 主張은 一種의 “集團的 指揮”의 범주內에서 北京-모스크라는 兩頭政治를 意味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社會主義的 國際主義”는 따지고 보면 以前부터 널리 알려진 헤게모니概念을 思想的인 面에서 달리 粉裝한 것에 不 過한 것이다.²⁾

이러한 점을 念頭에 두면서 蘇聯과 東歐諸國間에 締結된 政治的 雙務條約을 詳細히 究明해 보기도 하겠다.

勿論 그 者들 間에 締結된 多邊條約으로서 는 東歐相互援助條約 (바르샤와條約) 과 相互經濟援助會議 (COMECON) 를 위한 條約이 있다. 이러한 多邊條約에 立脚한 두개의 東歐諸國의 地域的인 組織體는 外見上으로 볼 때 西歐的인 國際組織體와 別로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西歐的인 國際組織體에 있어서는 超國家的인 性格이 顯著하게 나타나는데 比하여 東歐의 地域的인 組織體에서는 統合的인 作用이 欠如되고 있다.³⁾ 蘇聯이 主動이 되어 이러한 地域的인 組織體를 形成하게 된 動機는 蘇聯의 勢力圈과 利益圈을 確保할 수 있는 唯一한 國際法的인 結合體로서 政治的인 面에서 뿐만 아니라 法的인 面에서도 統合을 이룩해 보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組織體의 機能은 東歐羅巴 諸國에 屬하는 歐羅巴의 一部分을 西歐羅巴의 隸屬으로 부터 分離 또는 隔離시키는 데 作用하고 있다. “修正主義” 또는 “民族主義” 등의 多彩로운 主義·主張이 抬頭하면 할수록 蘇聯은 그의 衛星國家들과 雙務條約 締結이라는 方式을 通하여 그가 主導하는 國家結合을 더욱 堅固히 할 수 있다는 見地下에서 그의 衛星國家들과 締結한 여러 雙務條

約의 核心으로 볼 수 있는 防衛條約을 締結하는데 注力하였다.

蘇聯이 東歐羅巴에서 防衛條約體制를 構築하기 始作한것은 1943年 12月 12日 모스크바에서 蘇聯과 체코슬로바키아間에 締結된 友好, 協助 및 戰後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이라 할 수 있겠다.

본시 이 條約은 그의 附屬權에서도 強調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치스 獨逸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蘇聯과 체코슬로바키아의 隣接國家들의 加入을 許用한다는 뜻에서 多邊條約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戰勢의 有利함에 轉승하여 蘇聯은 그의 隣接國家들에 대하여 直接的인 影響力을 行使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는 隣接國家들과의 多邊條約 締結方式을 止揚하고, 그 代身 雙務條約을 締結하는 것이 그의 有利한 立場을 獲得하기 위한 보다 낫은 方法이라는 것을 認識하게 되었다.

終戰 直前に 蘇聯이 隣接國家들과 체결한 政治的인 條約으로서는 1943年 4月 11日字의 蘇聯과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同年 4月 21日字의 蘇聯과 폴란드間에 締結된 防衛條約을 들 수 있다.

그 後 蘇聯은 條約體制의 擴張을 위한 이니시야티브를 政治的 宣傳的인 理由로서 앞으로는 東歐圈의 餘他國家들에게 맡겨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蘇聯은 對外的으로 自己가 主動이 되어 防衛體制를 構築하지 않는다는 印象을 줄려고 努力하였다. 이러한 蘇聯의 態度는 蘇聯 外務省의 公式發表에서도 歷歷히 볼 수 있다. 즉 東歐圈에서 形成된 防衛體制는 一強大國의 hegemonie에 의해 造作된 政治的인 結合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企圖에 따라 東歐圈을 形成하는 諸國家間에 雙務的인 防衛條約이 연이어 締結되었다. 이리하여 유고슬라비아는 폴란드 (1946年 3月 18日), 체코슬로바키아 (1946年 5月 9日) 그리고 알바니아 (1946年 7月 9日) 등과 防衛條約을 締結하였다.

1947年 2月 10日字로 Paris에서 締結된 헝가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및 핀란드와의 講和條約締結後 유고슬라비아는 蘇聯의 後接下에 上記의 諸國家들과 防衛條約을 締結함으로써 蘇聯의 意圖한 바 目的에 順應하는데 寄與하였다. 즉 유고슬라비아는 불가리아 (1947年 11月 27日), 헝가리아 (1947年 12月 8日) 및 루마니아 (1947年 12月 19日) 등과 防衛條約을 締結하였는데 이러한 條約은 불가리아와 알바니아 (1947年 12月 16日),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1948年 1月 16日)의 條約에 의해 補完되었다.

이렇게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는 雙務的 防衛條約의 締結에

있어서 蘇聯의 手足的인 役割을 担当한 것은 事實이나 한편 유고슬라비아는 1946年 11月 27日 알바니아間에 関稅同盟에 관한 合意를 보았다. 1947年 8月 1日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의 會合에서 関稅同盟의 前段階로 볼 수 있는 関稅의 調整에 관한 協定을 締結하였다. 또한 1948年 1月 16日字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間의 防衛條約과 關聯하여 関稅同盟을 締結할 것을 予想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間의 條約締結과 관련된 関稅同盟과 같은 聯邦計劃에 대해 蘇聯은 그가 試圖한 計劃과는 背馳된다는 見地에서 유고슬라비아를 孤立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理由로서 蘇聯은 루마니아(1948年 2月 4日), 헝가리아(1948年 2月 18日) 및 불가리아(1948年 3月 18日) 등과 防衛條約을 締結함으로써 以前의 蘇聯의 敵國들이 蘇聯에 더욱 유착하도록 하고 유고슬라비아를 발칸半島에서 孤立시키는데 努力하였다. 이를 위하여 蘇聯은 1948年 4月 6日字로 핀란드와의 防衛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北方地域의 安全을 確保하였다. 그 後 체코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1948年 4月 23日), 폴란드와 불가리아(1948年 5月 29日), 폴란드와 헝가리아(1948年 6月 18日)

間에 防衛條約등이 제각기 締結되었다.

Tito 政府에 反對하는 勢力의 힘으로써 그 政權이 타도되리라고 믿었던 蘇聯의 希望은 무산되었다. 그러자 蘇聯은 共產포름에 忠誠을 맹서하는 人民共和國들을 더욱 結束함으로써 그의 敵인 유고슬라비아를 東歐防衛體制에서 追放하는 方法밖엔 없었다. 그리하여 1948年 末에 이르러 다시금 東歐衛星國家間에는 雙務條約의 形式으로 防衛條約이 締結되었다. 이에 따라 東歐諸國은 蘇聯의 指示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와의 모든 國交關係를 斷絶하고 말았다.

유고슬라비아와의 國交關係가 終局的으로 斷絶되자 蘇聯은 東歐衛星國家들에 대하여 絶對的인 支配를 行使하기 始作하였다. 蘇聯의 支配權을 擴張하는 手段으로서 一面으로는 暴力的인 힘의 誘示가 必要할 때 그의 從屬國들은 다 같이 이에 合勢하였을 뿐만 아니라 他面으로는 經濟的, 科學的, 技術的 및 文化的인 面에서는 雙務的 條約體制를 補充하는데 努力하였다.

1949年 1月 25日字로 創立된 COMECON은 強化된 統合機構의 役割을 担当할 目的이었으나 別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본시 Stalin은 東歐地域内の 衛星國家群을 併合할 意向을 가졌으나⁴⁾ 1940年 발틱코 國家들을 蘇聯에 併合시킨 例에 다른 衛

星國家群의 併呑은 實際로 行하지 않았다. 推測컨대 그와 같은 併呑은 對內·外的인 見地에서 너무나도 危險性이 많다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Stalin 死後 蘇聯政權은 個個 從屬國家들에 대하여 많은 自治權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와 同時에 그는 東歐圈에 屬하는 歐羅巴 部分에 대한 結束을 強化하기에 이르렀다. 東歐陣營에 있어서의 國家間의 關係는 1954/55年 以來 COMECON 機構의 改編과 바르샤바 條約機構의 創立에 의하여 새로운 基盤을 形成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6年 폴란드의 10月政變 및 同年 11月的 匈牙利 人民蜂起등으로 因하여 蘇聯은 “프로레타리아 社會主義的 支配를 強化할 必要性을 느꼈다. 東歐圈 國家중 蘇聯의 隷屬으로부터 解放되려는 者를 막기 위해 蘇聯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措置를 講究하였다.

그 첫째로 東歐圈의 統合을 들 수 있다. 蘇聯은 그의 衛星國家들과 雙務 또는 多邊條約을 締結함으로써 軍事, 經濟, 交通, 通信, 文化, 學問, 社會政策 및 法律등의 分野에서 統合을 試圖하였다.

그리고 두번째로 蘇聯은 東歐條約體制의 擴充이나 “國際的 分業” 制度의 導入으로써 이들 衛星國家들이 經濟적으로 蘇聯에 隷屬되는

것 만으로는 滿足하지 않고, 黨關係를 相互間 또는 多邊的인 面에
서 더 깊밀하게 結束하는데 努力하였다. 5)

蘇聯은 이러한 모든 努力에도 不拘하고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었다. 中·蘇間의 紛爭을 契機로 하여 東歐 衛星國家들간에는
蘇聯으로 부터 解放되려는 움직임이 強하여 졌다. 이러한 狀況下
에서 흐르시초프는 東獨을브리히트 共産政權을 強力하게 支援함과
同時에 Gomulka 와 Novotny 의 도움을 얻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
키아에 있어서 더 以上の 解弛가 없도록 하는데 努力하였다. 이
러한 努力의 一環으로서 蘇聯은 1964年 6月 12日字로 東獨과
防衛條約⁶⁾을 締結하였고, 또한 그는 이에 앞서 1943年 12月
12日字로 체코슬로바키아와 締結한 相互援助條約의 効力을 1963年
11月 27日의 追加議定書에 의해 延長하였다. 1970年 5月 6日
字로 蘇聯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새로운 防衛條約을 締結하였다.⁷⁾

1965年 4月 8日에는 蘇聯과 폴란드間에 締結되었던 相互援助條
約이 更新되었다.

이러한 條約의 締結은 大戦중과 終戰直後에 流行되었던 雙務條約
의 締結을 蘇生시켜 東歐圈內에 있는 그의 衛星國家들간의 結束을
더욱 堅固히 하고 그들을 蘇聯의 隷屬下에 들려고 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東歐圈에서 締結된 雙務條約체제의 根本構造는 “友好, 協力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이라는 名稱을 가지고 있다는 面에서 보아 政治的 條約에 該當되는 것이다. 이러한 條約은 類型上으로 区分하면 戰爭의 防止를 위한 條約으로서의 同盟(Entente) 및 協議條約을 意味하는가 하면, 戰時에 對備한 條約으로서의 保障 및 防衛條約을 意味하기도 한다.⁸⁾ 어떻든 이러한 條約은 大體的으로 防衛의 性格을 가지게 되므로 防衛條約 또는 相互援助條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⁹⁾ 또한 內容面으로 보아 이러한 條約은 統合條約으로 看做된다. 特히 “社會主義 陣營”에 있어서의 經濟的, 學術的, 技術的 및 文化的인 協助는 全的으로 雙務防衛條約에 依拠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Stalin時代 東歐圈에서 締結된 防衛條約은 全部 23個인데 유고슬라비아가 東歐圈에서 脫退한 後에도 有効한 條約의 數는 16個를 헤아리고 있다.¹⁰⁾

舊條約이나 改正된 條約을 莫論하고 防衛條項은 戰時를 眼中에 두고 있다. 舊條約에 規定된 防衛의 경우는 大體的으로 獨逸側으로 부터의 侵略行爲가 있거나 또는 獨逸과 “直接的으로나 또는

다른 形態로 侵略政策에 있어서 聯合된 國家의 侵略이 있을 때라고 하였다. 이 以外에도 一連의 條約에는 任意의 第3國으로부터의 侵略이 있을 경우에도 共同防衛가 可能하다고 規定하였다.

1943年 12月 12日字의 蘇聯·체코슬로바키아間의 條約, 1945年 4月 21日字의 蘇聯·폴란드間의 條約 및 1948年 2月 4日字의 蘇聯·루마니아間의 條約에는 獨逸을 唯一한 潛在的인 敵으로 規定하였다. 其他의 條約에서는 獨逸 및 그의 聯合國인 第3國도 敵으로 規定하였다.¹¹⁾

그 後 蘇聯이 그의 衛星國家群과 締結한 새로운 防衛條約에 의하면 大略 다음과 같은 경우에 侵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共同防衛의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64年 6月 12日字로 締結된 蘇聯과 東獨間의 防衛條約¹²⁾ 第5條 1項에는 바르샤와 軍事條約의 規定 (第4條 1項)과 同一하게 “어떤 國家나 어떤 國家群이 이 條約締結國의 一國家에 대한 武力的 侵略이 있을 경우”에 防衛條項이 發動된다고 規定하였다. 이러한 狀態가 發生한 경우 提供되는 援助는 바르샤와 條約의 規定에 따라 行하여 지게 된다. 被侵害國에 대한 援助가 어떤 方法으로 履行되는가에 관해서는 바르샤와 條約 第4條 1項의 規定에 의하

면 援助를 提供하는 國家의 自由裁量에 一任하고 있다. 그러나 東獨의 경우는 例外이다.¹³⁾ 바르샤와 條約에 관한 獨語의 原文案에 의하면 援助提供의 種類, 範圍 및 方針등은 其他의 締約國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폴란드語, 러시아語 및 체코슬로바키아語로 된 原文案에서는 各參加國이 武力的 侵略의 희생자에게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모든 手段으로 援助해야 된다고 規定하였다.

그러나 그 後 獨語로 된 確定文案에서는 上記의 表現과는 달리 “개별적 또는 他締約國들과의 合意로 그들에게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모든 手段으로 즉시 援助할 義務가 있다고 規定하였다. 東獨과 蘇聯이 防衛條約을 締結함으로써 蘇聯이 東獨의 援助提供의 種類와 方法을 決定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差別規定으로 미루어 볼 때 東獨은 1955年 바르샤와 條約에 加入된 以來 蘇聯에 完全히 隸屬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바르샤와 條約에 規定된 防衛條項에 依拠하면 他締約國들은 蘇聯을 위해 自動적으로 戰爭에 介入할 아무런 義務도 없는 것이다.

또한 蘇聯·폴란드間의 新防衛條約 第7條에는 “어떠한 國家나 어떠한 國家群이 武力的 侵略을 하는 경우” 戰爭狀態가 發生한다고 規定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假想의 侵略者는 同條約 第6條와

聯関을 지어 보면 西独의 軍國主義 및 復讐主義分子나 그와 友邦
關係에 있는 第3의 國家로 理解된다. 그런가 하면 蘇聯·체코슬
로바키아間에 締結된 議定書 前文에는 바르샤와 條約에 規定된 義
務만을 言及하고, 戰爭의 危險은 第2次 大戰을 惹起시킨 分子들에
의해 造成되고 있다고 하면서 “平和愛護者”인 東独은 위에서 말
한 바와 같은 假想의 侵略者가 될 수 없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14)

獨逸이나 그의 友邦國家를 假想의 敵으로 하는 多大數의 防衛條
約에는 “새로운 侵略에 의한 어떠한 危險에 대해” 共同的인 措置
의 可能性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武力的 侵
略이 있을 경우 提供되는 援助가 外交的 方法 또는 軍事的 方法
이 될수도 있는 予防措置를 嚴格히 區別할 必要가 있다.

蘇聯과 폴란드間에 締結된 防衛條約 第7條에는 援助義務에 관해
規定하고 있는 한편 第6條에는 “西独의 軍國主義 및 復讐主義分
子”와 그의 友邦國에 限定된 予防措置에 관해 規定함으로써 兩者
의 密接한 關聯性을 明示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과 東独과의 防
衛條約 第4條에는 上記 第6條에서 보는 바와 같은 制限性을 찾
아 볼 수 없다. 第4條에는 “第2次 大戰의 結果를 修正하려고
努力하는 軍國主義와 復讐主義分子들의 侵略을 阻止하기 위한” 措置

를 取할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同條文에 規定된 軍
國主義 및 復讐主義分子는 西獨만을 意味하는것 같지는 않다. 理
論上으로 보아 全獨逸이나 西獨에 대한 特別措置에 관한 規定은
유엔 憲章 第 107 條와 關聯된 第 53 條 1 項(3)의 特別規定에 의
하여 以前의 敵國에 대한 予防措置가 許容되는 것이므로 第 2 條
4 項에 規定된 暴力禁止의 例外가 되는 것이다. 15)

第 107 條는 하나의 暫定的 規定으로 着做되며 時日이 經過된 오
늘에 이르러서는 無用之物에 不過한 感마저 든다. 16) 만일 同條文
이 適用된다면 全獨逸이 對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東獨은 二
國家說에 따라 消滅된 獨逸帝國內에 東獨과 西獨이라는 두개의 新
生國家가 成立되었고, 그 중 西獨은 軍國主義的 侵略國家인데 反하
여 東獨은 “平和愛護國”으로 自處하고, 同條文은 오직 西獨에만
適用되고 東獨에는 關聯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理論上 納得할 수
없는 모순을 露出하고 있다.

蘇聯과 東獨圈諸國間에 締結된 新防衛條約에는 “平和共存”에 관
한 規定이 많다. 또한 新·舊條約의 序文에는 유엔 憲章의 目的
과 原則은 勿論 民族自決權과 人權에 關係 規定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에 關係서도 規

定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은 “兄弟的 相互協助”를 意味하게 된다. 즉 “兄弟的 相互協助”라는 概念은 經濟的·技術的인 協助를 保障받는데만 使用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오히려 共產主義的인 單一黨에 의한 支配를 支持하고, 民族·革命的인 解放運動과 共產主義에 의해 일으킨 內亂을 支援할 義務가 뒤따른다는데에 그 特別한 意義가 있는 것이다. 17) 1956年 헝가리아의 人民 烽起時 蘇聯의 軍事的 干涉은 이러한 意味에서 헝가리아 勞動者에게 支援을 提供하기 위한 “國際的 義務” 履行으로 看做되고 있다. 또한 “프로레타리아 社會主義的 援助”의 原則에 의하면 社會主義的으로 結束된 國家의 權利, 특히 소비에트의 支配權에 歸因하여 現存하는 共產主義 政權의 維持를 위하여 干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프로레타리아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에서 由來된 干涉權은 國內問題不干涉의 義務와 競合되는 셈이다. 이미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舊條約에는 유엔 憲章의 目的과 原則 以外에도 條約의 實行은 憲章의 原則에 符合되도록 履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例挙하고 있다. 蘇聯과 폴란드間의 防衛條約 第7條는 防衛의 경우 明白하게 유엔 憲章 第51條에 規定된 個別的 혹은 集團的

自衛權에 관해 明示하고 있다. 이어 同條文에는 締約國은 防衛義務의 履行을 위해 取한 措置에 관해서는 安全保障理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다. 蘇聯·東獨間의 防衛條約 第5條에는 直接的으로 第51條를 引用한 規定은 없으나, 條文의 內容에 의하면 “安全保障理事會가 世界平和의 回復과 維持를 위해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경우에는 즉시 이러한 措置는 中止되어야 한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 본시 集團的 自衛權의 意義는 많은 國家가 集團的으로 自衛를 行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공격을 받은 國家가 屈服하게 되는 경우에는 必지 않아 他國家도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他國家가 援助하는 것은 同時에 自國에 대한 공격을 防衛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集團的 自衛權은 “緊急避難(Nothilfe)이며 “正當防衛”(Notwehr)는 아닌 것이다. 18)

東歐圈의 國際法學者들은 雙務的 防衛條約을 유엔 憲章 第8章에 規定된 地域的 協定으로 보고 있다. 19)

유엔 憲章에 의한 地域的 協定은 外部國家의 侵略에 대하여 防禦할 뿐 아니라 該当地域內에서의 安全에 寄與하는데 있다. 20)

그러므로 外部로 부터의 侵略에만 對備하는 協定은 地域的 協定이

될 수 없다. 雙務的 防衛體制에 의해서는 오직 集團的인 自衛
權만이 保障되는 것이며, 이 以外에 集團的으로 安全을 保障한다는
뜻은 아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地域的 協定の 本質은 外部의
侵略으로 부터의 防禦와 該当地域內에서의 安全에 있다. 東歐羅巴
雙務條約에는 紛爭의 平和的 解決方法에 관한 條項도 欠如되어 있
다. 그러므로 東歐圈에서 締結된 防衛體制는 蘇聯의 支配的 性格
을 特別히 浮刻시킨 同盟에 不過한 것이며 유엔 憲章의 意味에
있어서의 地域的 協定은 아닌 것이다. 21)

이제 그럼 集團的 自衛權을 規定한 第 51 條와 地域的 協定을 規
定한 第 8 章(第 51 ~ 54 條)에 있어서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區別해
보기로 하겠다. 22)

兩者간에 있어서의 共通點으로는 防衛를 위한 軍事的 行動에 대
한 合致된 規定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第 51 條에 있어서
“自衛의 行使에 當하여 加盟國이 取한 措置”라든가, 第 52 條에서의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관한 事項” 등이 있는데, 이런것을
위한 協定은 유엔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協定の 內容은 防衛協定에만 限定되고 侵略協定은 許容되
지 않는다.

差異点으로서는 第8章에 規定된 地域的 協定에 따라 安全保障理事會는 이니시아티브를 取할 수 있는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즉 第52條 3項에 의하여 安全保障理事會는 “地域的 紛争의 平和的 解決의 發達을 奨勵하여야 하며”, 第53條 1項에 의하여 그는 “.....強制行動을 위하여 適當한 경우에는... 地域的 協定 또는 機關을 利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第51條에는 이러한 規定들이 없다. 또한 安全保障理事會에 대한 報告義務에 관해서는 多樣하게 規定하고 있다. 第54條에는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관한 문제에 限해서는 “地域的 協定이나 地域的 機關에 의하여 開始되고 있는 活動에 대하여 恒時 充分한 通報를 받고 있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反해 第51條에 의하면 이 미 加盟國이 取한 措置에 관해서만 즉시 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計劃된 措置에 대해서는 報告의 義務가 없는 것이다. 第51條에 의해 加盟國이 取한 措置에 대해 安全保障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의 行動을 取할 수 있다.

첫째로 - 安全保障理事會는 加盟國의 措置에 대해 滿足함으로써 別途로 理事會의 한 個別的인 行動은 取하지 않는 경우이며, 둘째로 加盟國의 措置와 並行하여 安全保障理事會가 措置를 取할 수도 있

으며, 셋째로, 加盟國을 代身하여 安全保障理事會가 措置를 取하기도 한다. 이에 反하여 第 53 條 1 項에 의하면 地域的 機關은 安全保障理事會의 許可없이는 如何한 強制措置도 取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同條文 3 項에 規定된 第 2 次 大戰중 憲章의 署名國의 敵國이었던 國家에 대해서는 第 107 條의 規定에 따라 完全히 自主的인 措置가 許容되는 것이다.

集團的 自衛權 (第 51 條) 과 地域的 協定間에 介在한 法的 解釋問題를 圍繞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았는데 여기서 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安全保障會에 대한 報告問題가 實際上 浮上되고 있다.

여태까지의 實際에 立脚해 볼 때 第 54 條에 의한 安全保障理事會에 대한 地域的 機關의 報告는 極히 不振한 狀態에 놓여 있다.

여태까지의 例에 의하면 美國機構 (Organisation der Americanischen Staaten) 와 間美洲平和委員會 (Inter-American Peace Committee) 가 Nicaragua 와 Costa Rica (1949 年, 1955 年) 그리고 Cuba 와 Dominica 共和國 (1951 年 / 1952 年) 間의 紛爭이 發生하자 이에 대한 仔細한 報告를 安全保障理事會에 한 바 있다.

그러나 安全保障理事會가 將次 一般的이거나 特殊한 事項에 接하여 報告의 義務를 誠實히 履行할 것을 要求할 可能性이 全혀 排

除된 것은 아니다. 第 53 条 1 項에 의하면 地域的 協定이나 地域的機關이 行하는 如何한 強制措置도 安全保障理事會의 許可를 얻어야 되므로 그들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強力한 統制下에 隸屬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理由로서 近来에 締結되는 地域的 協定은 유엔 憲章 第 8 章(第 52 条-第 54 条)의 規定에 依拠하기 보다는 集團的 自衛權이 發動될 수 있는 第 51 条의 形態로 締結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現今에 이르러 國家들은 東·西間의 緊張을 勘案하여 地域的 協定을 締結함에 있어 第 51 条에 依拠한 行動의 自由를 차지하려는 傾向이 濃厚하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東歐圈 諸國間에 이미 締結된 雙發的 防衛條約은 直接的으로는 第 51 条를 規定하지 않고 條文의 內容面에서 集團的 自衛權을 明示하거나, 또는 明示적으로 第 51 条를 規定한 條約을 볼 때 그들은 第 8 章의 拘束力으로 부터 解放되어 行動의 自由를 享有해 보자는 것을 歴歷히 알 수 있다.

또한 地域的 協定과 普遍的 世界機構인 유엔機構와는 微妙한 緊張關係가 形成되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때 地域的 協定이 成立되면 그 만큼 유엔機構의 弱화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여 協定の 成立으로 말미암아 特定地方이나 特定地域은

유엔機構의 管轄에서 排除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그런가 하면 他面으로는 이 協定이 多大數의 締約國으로 부터 強力한 支持를 받아 그의 目的을 成功裡에 履行할 수 있으므로써 유엔機構의 機關으로 看做될 수도 있는 것이다. Fraenkel은²³⁾ 이러한 것을 政治的 見地에서 다음과 같이 比喩하고 있다.

地域的 協定の 歷史性으로 볼 때 이 協定은 “前·後面에 얼굴을 가진 머리”(Januskopf)라고 하였다. 그 一面은 普遍的인 世界平和機構의 實現과 具體化를 達成하기 위해 前面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一面은 過去의 軍事同盟体制의 回復을 위해 後面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友好 協助 및 相互援助등을 骨子로 하는 東歐圈의 雙務的 防衛條約은 바르샤와 條約機構의 締結로써 더욱 補充되었으나, 이로써 代替된 것은 아니다. 特히 이러한 防衛條約의 締結은 1964年을 期하여 大幅的인 修正 또는 補完을 보게 되었는데 그 動機는 東獨이 이에 積極적으로 合勢하면서 부터 였다. 그 後 바르샤와 條約機構의 全會員國은 相互間에 雙務的 防衛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密接한 關係를 가지게 되었다. 바르샤와 條約機構의 成立以來 雙務的 防衛條約의 外形的인 機能은 一般法(lex generalis)으로서

의 多邊規定으로 變形되었다. 그 以前에는 雙邊的 條約은 獨逸만
을 對象으로 하는 特別法(lex specialis)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그 間 雙務條約은 東歐圈諸國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特殊性을 考
慮함으로써 그의 機能面에 많은 變遷을 招來하였다. 그리하여 長
期間 有效한 이 條約에는 兄弟黨과 多方面으로 社會主義的 共同體
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國家들의 努力이 反映되고 있으며 이러한
事實의 表現은 條約에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原則이 明示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수 있는 것이다. 24)

바르샤와 條約에는 “歐羅巴에 있어서의 集團的 安全保障制度”라
는 條項이 있는데 比하여 東歐圈의 雙務的 防衛條約에는 이에 관
한 아무런 條項도 찾아 볼 수 없다. 近來에는 바르샤와 條約國
들은 機會있는대로 西方側과 東歐側에 存在하고 있는 多邊的인 軍
事同盟(NATO와 Warschauer Pakt)의 解体를 強力히 主張하면서
도 東歐諸國間에 締結된 雙務的 防衛體制의 解体에 대해서는 一言
半句도 言及하지 않고 있다. 25)

1943年 以來 蘇聯과 東歐圈諸國, 또는 東歐圈諸國相互間에 締結
된 雙務的 防衛條約에 關係 그 由來, 法的性質 및 이 防衛體制와
바르샤와 條約間의 關係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제 그럼 이러

한 것을 토대로 하여 多邊條約으로서의 바르샤와 條約機構에 關係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이미 1949년에 創立된 COMECON 以外에 1955年 5月 14日
에 創設된 바르샤와 條約은 友好, 協助 및 相互援助에 關係 內容
을 가진 多邊條約이다. 創立時 이 條約의 會員國數는 8個이었으
며, 個別的으로 例拳하면 알바니아, 불가리아,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아 등이다. 그러나 1968年 9月
13日 以後 그 會員國數는 7個國으로 減少되었다. 이날을 期하
여 알바니아는 바르샤와 條約會員國중 5個國이 聯合하여 1968年
에 發生한 체코슬로바키아 內紛에 軍事的인 介入을 恣行한데 對하
여 抗議하면서 이 機構로 부터 脫退하였다.

東歐圈이 바르샤와 條約機構를 創設한 動機가 무엇보다도 北大西
洋條約機構 (NATO) 와 西歐羅巴同盟 (Westeuropäische Union) 등
의 整備에 對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 以外에
도 蘇聯 指導層이 意圖한 바는 그의 主導下에 創設된 이 條約機
構는 大略 다음과 같은 세가지 目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겠다.

첫째로, 蘇聯은 그의 勢力圈內에 있어서 軍事的인 協力과 防衛態勢

를 改善하고 強化하며, 이미 存続하고 있는 雙務的 防衛体制을 多
边的인 防衛機構에 의하여 擴張하는데 있으며,

둘째로, 個個 締約國內에 駐屯하고 있는 蘇聯軍을 위한 새로운
法的 根拠를 確保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끝으로, 蘇聯이 東歐圈
內에서 行하는 支配的 役割을 다른 共產國家들이 認定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26)

본시 東歐圈에 創設된 이 軍事同盟은 東·西間의 國際的 勢力均衡
을 固定化하는데 있었으나, 中·蘇紛爭과 çek코슬로바키아 烽起에 蘇
聯의 介入 以後 부터는 東歐圈에서의 既存 關係의 維持를 위한
蘇聯의 道具로 轉落되었다. 본시 이 條約機構는 NATO 에 대하여
交流할 目的으로 창설되었으나 그 後 이것은 漸次的으로 東歐圈의
政治的, 理念的인 支柱로서의 役割을 担当하게 되었다. Breschnev
政策은 歐羅巴의 安全을 위하여는 이 條約機構를 無用之物로 變化
시켰다. 集團的 安全保障에 있어서는 條約의 모든 締約國은 絶對
的인 平等과 獨立이 前提되는 것이다. 또한 集團的 安全保障에
있어서는 防衛條約의 一會員國에 대해 侵攻이 있을 경우 其他 모
든 會員國들은 그들이 어떠한 社會秩序에 屬하고 있던 間に 즉시
被侵國에 援助를 提供할 義務가 있다.

바르샤와 條約機構의 會員國에 관한 條項은 第9條에 規定하고 있는데 그 內容에 의하면 “이 條約에 參加함으로써 諸國民의 平和와 安전의 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平和愛護國의 努力의 結果에 寄與할 용기가 있음을 表明하는 다른 國家들이 社會制度나 國家制度에 關係없이 加入할 수 있도록 開放한다”는 것이다.²⁸⁾ 東歐國學者들은 바르샤와 條約을 開放條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經驗이나 第9條에 規定하고 있는 “平和愛護國”이라는 表示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條約機構는 하나의 “制限된 開放機構”²⁹⁾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렇게 制限된 해석을 할 수 있는 根拠는 第7條 2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同條에 의하면 國家가 新會員國으로서 加入하고자 할 때 條約機構의 原會員國들은 審査權을 行使하기로 되어 있다. 同規定에 의하면 “締約國은 現行 國際條約에 立脚한 締約國의 義務가 이 條約의 規定에 相馳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宣言義務는 이 條約機構에 加入申請을 하는 國家에도 適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條約機構의 有効期間에 관해서는 第11條에 規定하고 있다. 同條 1項에 의하면 이 條約은 20年間の 効力を 가지며, 이 期間의 滿了 一年前에 폴란드政府에 廢棄宣言을 제출하지 않는

締約國에 대해서는 이 條約이 다시 10年間 効力を 갖는다는 것이다. 이 條約에는 事前通告權이 없으므로 會員國이 脫退하고자 할 때에는 多邊條約에 관한 一般國際法上의 規定에 의하는 方法 밖에 없는 것이다.³⁰⁾

條約 前文에서 締約國들은 “歐洲의 모든 國家가 社會制度에 관계없이 참가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歐洲의 平和를 확보하기 위한 努力의 結속을 가능케 할 歐洲에 있어서의 集團安全保障體制를 수립하고자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고 있다. 締約國의 이러한 意圖에 의한다면 條約機構는 “歐羅巴에 있어서의 集團安全保障體制”로 變型시킬려고 한 點을 歴歷히 볼 수 있으며, 이러한 意圖는 第11條 2項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同條에는 “이 條約은 締約國이 시종일관하여 追求하고 있는 歐洲集團安全保障體制의 結成 및 그 目的을 위한 集團安全保障에 관한 全歐洲 條約의 締結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全歐洲條約이 發効되는 날 効力を 喪失한다”고 規定하였다.

그러므로 이 條約機構는 内部的 規定, 즉 條約自體의 規定에 의한다기 보다는 外部的 條件, 즉 全歐洲條約의 發効日로서 消滅되는 것이다. 이런 意味로 본다면 條約機構의 有効期間은 條約의 會員

國이 아닌 다른 國家에 의해서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將次 創立될 可能性마저 稀薄한 全歐羅巴集團安全保障體制에 이 條約機構를 自動적으로 取用시켰다는 條約의 前文이나 이와 關聯된 第11條 2項의 規定은 現今의 國際法 實際에 있어서는 生疎한 것 이며, 宣傳에 不過한 것이라 하겠다.³¹⁾ 비록 이러한 全歐羅巴集團 安全保障體制가 成立되었다 하더라도 條約機構는 그 代用物 없이는 消滅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 証拠로서 第11條 2項을 들 수 있는데, 이 規定에는 全歐羅巴集團安全保障體制에 관한 條約은 어떠한 內容을 가지며, 어떠한 節次를 거쳐 成立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하지 않고 있다. 特히 바르샤와 同盟體制가 成立된 當時 蘇聯은 政治적으로 全歐羅巴를 網羅한 하나의 集團의 安全保障體制를 創立하자고 屢次 提案한바도 있었으며, 또한 그 後 바르샤와 同盟의 政治的, 軍事的 目的 및 作用面에서 蘇聯이 차지하고 있는 地位가 絶對적으로 優勢하다는 것을 考慮해 볼 때 위에서 指摘된 바르샤와 同盟의 自動的 變型은 空念仏에 不過함을 알 수 있다.

바르샤와 條約機構의 地域的인 有效範圍는 歐羅巴地域에 限定된다. 條約 前文에서 “歐洲의 平和愛護國의 안전의 옹호와 歐洲에 있어

서의 平和維持를 위해 必要한 措置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確信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第4條에는 “歐洲에 있어서 武力攻撃이 있을 때” 締約國은 援助할 義務가 있다고 規定하였다. 따라서 바르샤와 條約의 地域的 有効範圍은 아세아地域에 있는 蘇聯領域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歐羅巴에 대한 攻撃이 있을 때에 限하여 効力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NATO의 이에 관한 規定과는 달리 바르샤와 條約은 歐羅巴地域以外에는 條約의 効力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明白한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東歐國學者들은 이 條約의 効力을 中共에도 適用할 수 있는지의 可否에 관해 論議되었다. 中共은 1954年 末 蘇聯에서 開催되었던 바르샤와 條約機構予備會談에도 參席하였을 뿐 아니라 1955年 5月 폴란드에서 開催되었던 創立總會에도 參席하였다. 署名日에 臨하여 中共代表는 公式聲明을 通하여 中共은 바르샤와 條約機構에 “全적으로 同意하고 支持한다”고 하였다.³²⁾ 그러나 中共은 어떠한 軍事的 援助義務도 受諾하지 않았다.

共產主義學者들은 中共이 바르샤와 條約의 法的 拘束을 받는 理由로서 1950年 2月 14日字로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間의 友好, 同盟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을³³⁾ 들고 있다. 그러나 이 條約과 바르샤와 條約의 關係는 實質적으로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다. 이미 본 바와같이 바르샤와 條約은 全적으로 歐羅巴 地域內에 있어서의 軍事的 紛争에 適用되는데 反하여 中·蘇間의 防衛條約은 政治的 軍事的인 核心이 全적으로 日本 또는

그와 直接・間接으로 聯合한 國家들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³⁴⁾ 中・蘇紛爭 以後에도 이 條約은 계속 有効하다.

또 어떤 共產主義 國際法學者들은 中共을 바르샤와 條約과 關聯시키는 補助的인 方法으로 社會主義間에 適用되는 國際法 理論을 適用해 보기도 한다. 즉 그들의 見解에 의하면 바르샤와 條約은 오직 歐羅巴地域에만 適用되는 것은 規定으로 보아 틀림없는 事實이지만 社會主義國際法理論에서 適用되는 “相互的 援助”의 原則은 締約國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適用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東歐圈의 學者는 바르샤와 條約에 대한 中共의 拘束性을 中共代表가 으로써 뿐만 아니라 平等한 會議參席者로서 參席하여 協議會의 共同聲明에도 署名하였다는 點을 力說하고 있다.³⁵⁾ 바르샤와 條約이 締結된 以後 中・蘇間의 紛爭이 發生한 1961年 까지 中共은 으로써의 資格으로 參席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하나의 限定된 政治的 協助方式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바르샤와 條約에 대한 軍事的인 拘束같은 것은 찾아 볼수 없다. 中共은 이 條約의 下部機關인 統合司令部에 그의 軍隊를 配屬시킨 일도 없으며 바르샤와 同盟의 軍事技術統合이나 作戰計劃에도 參加하지 않았다. 勿論 中共은 그의 外交政策의 基本方針에 따라 東歐圈國家인 東獨(1955年 12月 25日), 체코슬로바키아(1957年 3月 27日) 및 헝가리아(1959年 5月 6日)³⁶⁾ 등과 友好 및 相互協助에 관한 條約을 締結하였으나 이러한 條約에는 아무런 防衛 條項이 內包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림 바르샤와 條約은 유엔 憲章과 어떠한 法的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바르샤와 條約의 前文에 의하면 締約國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고 規定하였다. 유엔 憲章 第2條 4項에는 모든 加盟國은 그 國際關係에 있어서 如何한 國家의 領土保全이나 또는 政治的 獨立에 대하여서도, 또 유엔의 目的과 兩立할 수 없는 다른 如何한 方法에 의한 것이라도 이를 참가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엔 憲章은 會員國이나 非會員國을 莫論하고 暴力의 使用이나 危脅을 禁하고 있다. 또한 第2條 3項에 따르면 모든 加盟國은 國際紛爭을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國際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도록 解決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平和的 解決 方法은 別途로 第6章에 詳細히 規定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유엔의 重要的 目的은 大略 두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로 世界의 平和와 國際的 安全을 保障하는데 있으며 다음으로는 危脅되거나 危殆로운 平和와 安全은 回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兩目的은 憲章 第8章에 規定된 地域的 協定에 의해서도 履行될 수 있다. 第52條 1項에 의하면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관한 事項으로서 地域的 行動에 適當한 것을

處理하기 위한 地域的 協定 또는 地域的 機關의 成立을 妨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前提條件으로서는 地域的 協定이나 機關 및 그의 行動이 유엔의 目的과 原則에 符合되어야 하는 것이다.

第 8 章의 規定에 依拠해 볼 때 바르샤와 條約은 歐羅巴에 限定된 地域的 効力을 가지고 있다는 面에서는 地域的 協定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資格으로서 바르샤와 條約은 유엔 憲章에 規定된 이에 관한 모든 權限을 行使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地域的인 効力範圍內에서 發生할런지도 모르는 紛爭에 대한 解決方法에 관해서는 아무런 節次規定도 두지 않고 있다. 이 條約은 NATO의 경우와 同一하게 防衛條項에 있어서는 유엔 憲章 第 51 條에 依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侵略의 防禦에 관한 雙務 또는 多邊條約은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權의 경우에 限하여 許容되는 것이다. 第 51 條에 依拠한 防衛同盟의 締結은 將來의 侵略에 대한 予防的 措置이며 이러한 것은 유엔 憲章, 第 2 條 4 項에 規定된 暴力行使禁止에 該當되는 것은 아니다. 37)

바르샤와 條約의 核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第 4 條에 規定한 防衛條項이다. 同條에는 “歐洲에서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대한 어

는 國家 또는 國家群의 武力攻撃이 있을 경우 各 締約國은 유엔 憲章 第 51 條에 따른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權의 行使로서 그러한 공격을 받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國家에 대해 個別的으로 또는 他 締約國과의 合意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모든 手段으로 즉시 援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規定하였다. 締約國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回復 및 維持를 위해 취해야 할 共同措置에 관해서 즉시 協議해야 한다. *고 規定하였다. 바르샤와 條約의 自動的인 戰爭開始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條約에서는 作戰的 決定權을 統合司令部에 自動的으로 移讓한다는 아무런 規定이 없는 것이다. 38)

여기서 하나 興味로운 것은 共產國家의 國際法理論은 바르샤와 條約에 規定된 防衛條項을 自己陣營內에서의 軍事的 侵略에 대해서 어떻게 適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一切 沈黙을 지키고 있다. 共產圈 學者들의 見解는 소위 社會主義 國家間의 紛爭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蘇聯의 國際法 學者인 G. I. Tunkin은 社會主義 國家間에 締結된 많은 條約에는 不可侵原則을 規定하지 않는 것이며 그 理由인즉 社會主義 國家間의 關係에 있어서는 이 不可侵의 原則을 適用할 아무런 根拠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9)

또 하나指摘해 들것은 軍事的 侵略으로 말미암아 犧牲된 國家의 意思에 反한 援助가 可能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共產圈의 學者들은 구구한 答弁을 하고 있다. 40) 어떻든 위에서 論及한 두 경우는 1956年 헝가리아의 人民烽起에 대한 蘇聯軍의 介入과 아울러 1968年 체코슬로바키아의 改變에 대해 5個바르샤와 同盟軍의 侵入으로써 더욱 明白해 졌다.

國際法 理論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條件을 充足했을 경우 不法的인 干涉이 成立된다. 그 하나는 一國家의 主權과 獨立에 대해 獨斷的인 介入이 있을 경우이며, 또 하나는 이러한 介入이 合法的인 根拠가 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干涉의 概念에서 다음과 같은 原則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즉 各 國家는 直接 侵略 當한 國家의 諒解下에 이 國家에 대하여 援助할 權利가 있는 것이다. 當該國家가 그러한 承諾을 하는 경우 비로소 干涉의 不法性은 排除되는 것이다. 그러나 國際法上 어떠한 國家도 他 國家의 反對意思에도 不拘하고 그 國家를 援助할 權利는 없다. 체코슬로바키아의 合法政府의 要請도 없는 蘇聯軍의 介入은 「不法的인 占領」 41) 에 該當되며, 유엔 憲章에 規定된 國內問題不干涉의 原則에도 違反되는 것이다. 蘇聯이 헝가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干涉은 바르샤바 條約의 防衛條項에 그와 같은 內政干涉權을 保障하였더라면 不法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르샤와 條約 第4條가 準用한 유엔 憲章 第51條에서는 外部로 부터의 武力的 攻擊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東歐圈의 法的 見解에 있어서도 바르샤와 條約에 依拠하여 潛在的인 敵에 대한 予防措置를 取하기 위한 侵略의 危險이 있다는 口實下에 防禦에 臨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2) 그러므로 바르샤와 條約 第4條는 內部的인 危險이 存在한다는 것 만으로는 發動될 수 없고 오직 外部로 부터의 侵略이 있을 경우에만 適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條文에 따르면 防衛狀態는 外部로 부터의 軍事的 侵略에 대한 防禦 以外の 다른 경우를 위한 規定은 아닌 것이다. 特히 東歐圈의 軍事同盟은 一締約國의 政府나 國家組織이 人民烽起에 의해 危脅을 당할 때 軍事的인 支援을 할 수 있는 아무런 規定도 없다. 그러므로 헝가리아의 內政에 대한 蘇聯의 軍事的 介入은 不法的이라 할 수 있다. 43)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政變에 있어서 5個 侵略軍은 第5條에 의하여 設置된 統合司令部를 發動할 可能性도 構想하였다. 즉 이 司令部에는 第4條에 規定한 防衛狀態보다 더 큰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즉 第5條에는 締約國은 그 國民의 平和的인 勞動을 보호

하고 그 國境 및 領域의 不可侵을 보장하여 가능한 侵略에 대한 防衛를 보장하기 위해 그의 防衛能力的 強化에 必要한 다른 合意된 措置를 취한다고 規定하였다.

蘇聯의 見解에 의하면 "侵略"의 概念에는 軍事的인 侵略⁴⁴⁾ 뿐 아니라 所謂 經濟的, 思想的 侵略 및 당돌한 政治的인 浸透등을 例擧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바르샤와 締約國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防衛能力"이 必要했는지를 事前에 慎重히 檢討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第5條에 의하면 多數의 締約國은 一個締約國이 그의 防衛態勢에 대한 義務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口實으로 하여 그 締約國에 대하여 暴力을 行使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와는 달리 蘇聯은 1956年 헝가리에 그의 軍隊를 駐屯시켰는데 그 法的 根拠를 第5條에서 찾고 있다. 1955年 5月 14日字의 統合司令部 設置에 관한 바르샤와 同盟國의 決議에서 "條約參加國의 領土上 聯合軍의 駐屯은 이들 國家間의 合意下에 共同防衛의 要請에 順應하여 實施하게 된다"는 것을 明示하였다. 이러한 決議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蘇聯軍의 헝가리 駐屯은 이 決議에 依存할 수 없었다. 즉 蘇聯의 介入은 "共產防衛"에 依拠한 것이 아니라, 헝가리의 內政干涉을 意味하

는 것이었다. 45)

끝으로 바르샤와 條約機構의 機關과 機能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이 條約機構의 構造, 機能 및 管轄事務에 관해서는 別로 알려진바 없다. 이 條約自体로 볼 때 多邊的인 對外政策的인 調整 및 軍事的인 協助에 관한 制度的인 構造面에 있어서 未洽한 點이 많다. 이 條約의 目的과 任務에 관해서는 第6條와 第5條에서 2個의 重要機關을 規定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政治協議 委員會이며, 또 하나는 統合司令部이다. 1969年 3月 17日 부다페스트에서 開催되었던 政治 協議委員會에서 重大한 構造的 變更을 決議하였는데 그 決議文의 內容에 의하면 “參加國들은 充分히 檢討하고, 바르샤와 條約의 締約國 國防長官委員會를 위한 原則, 聯合軍 및 統合司令部에 관한 새로운 原則 그리고 바르샤와 條約의 防衛機構의 構造와 指揮機關을 完璧하게 할 目的을 가진 其他 文書를 全員一致로 確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條約機構의 構造나 管轄事務등에 관해서는 具體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바르샤와 條約機構에 있어서 政治적으로 最高機關은 政治協議委員會이다. 第6條 1項에 의하면 各締約國은 一名의 政府構成員이나 또는 其他 特別히 任命된 一名의 代表者를 이 委員會에 파견하도록 되어있다. 各 會員國이 政治協議委員會의 討議에 파견하는 代

表團의 數는 制限되어 있지 않다. 各 參加國은 代表團의 數와는 관계없이 委員會에서 한 票의 投票權만을 가진다. 46) 그리고 投票方式과 節次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委員會에 派견되는 代表는 國務總理 뿐만 아니라 外務長官이나 國防長官과 같은 政府閣僚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特別히 指摘하고 싶은 것은 會員國의 共産黨이나 勞動黨의 黨首들이 國務委員의 身分을 갖지 않고도 政治協議委員會에서 決定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委員會는 政治的 및 軍事的인 機能을 調整하고 있다.

바르샤와 條約 第3條에 의하면 이 委員會는 締約國의 共通利害에 관한 모든 중요 國際問題에 관해 相互協議하며 이 協議에 있어서 締約國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강화라는 觀點에 立脚한다는 것이다.

1955年 5月 14日字의 統合司令部 設置에 관한 바르샤와 會員國의 決議文에서 聯合軍의 機構와 防衛能力의 增強에 관한 事項은 政治協議委員會에서 討議하고 適切한 決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第4條에 依拠한 防衛狀態의 경우 政治協議委員會는 즉 시 이 同盟의 軍事的 行動에 관한 全体討議를 할 수 있도록 추薦하고 그의 見解에 따른 적절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第8條에 의하면 同盟의 政治的 最高機關인 이 委員會가 締約國間의 經濟的 및 文化的 關係의 發展을 강화할 任務를 지고 있다.

第6条 2項의 規定에 따라 政治協議 委員會의 補助機關으로서 常設委員會와 統合事務局이 設置되었다. 政治協議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되고, 條約의 實現과 관련된 問題를 討議하기 위해 年2回 以上 會合하도록 決議하였다. 이러한 非常設的인 委員會를 補助하기 위하여 新設된 常設委員會는 對外的 問題에 관한 建議文을 作成할 任務를 지고 있다. 그리고 統合事務局의 權限과 事務에 관해서는 別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條約의 實現을 위한 事務를 處理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第5条에 의하면 締約國은 共同으로 정한 原則에 立脚하여 행동할 統合司令部의 설치에 合議하였다. 그러나 各 締約國이 어느 程度의 軍隊를 統合司令部에 配置시켜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不明하다. 統合司令部는 特히 바르샤와 同盟의 防衛能力을 維持增強하여 戰時에 對備하여 軍事的인 作戰計劃을 作成, 調整하고, 軍隊의 配置에 관해 決定할 任務를 지고 있다. 또한 統合司令部는 同盟軍의 訓練, 武裝 및 駐屯에 관해 指揮할 權限을 가지고 있다. 締約國의 軍隊로 構成된 聯合軍의 總司令官職에는 항시 蘇聯將校가 任命되도록 合意보았으며, 副司令官에는 締約國의 國防長官이나 其他의 軍指揮者를 任命함으로써 그들이 聯合軍에 配置된 自國의 軍隊에 대해 命令할 수 있도록 하였다. 47)

1969年 3月 17日 부다페스트에서 開催되었던 政治協議委員會의 決議에 의하면 3개의 새로운 機構를 創設하였는데, 그것은 締約國 國防長官委員會, 聯合軍 軍事評議會 및 聯合軍參謀部등이다.

締約國 國防長官委員會는 各締約國의 國防長官과 聯合軍 最高司令官 및 聯合軍 參謀總長으로 構成된다. 이들 國防長官은 1961年以來 定期的으로 會晤를 거듭해 왔으며, 이 決議를 通하여 그때까지 行하여진 實際를 制度化한데 不過하다. 그리고 이 委員會에 있어서 蘇聯이 차지하는 地位는 絶對的인 것이다. 이 委員會가 設置됨으로써 締約國의 國防長官들은 蘇聯의 聯合軍 總司令官과 對等하게 바르샤와 條約機構의 最高軍事機關을 形成하게 되었다. 48) 뿐만 아니라 이 委員會의 決定은 條約機構 그 自体의 決定으로 看做하게 되었다.

聯合軍 軍事評議會에 관해서는 明確한 資料가 없어 一律的으로 말하기는 困難하나, 여태까지 이 評議會의 會議 結果에 대한 커뮤니케에 의하면 49) 軍事評議會의 機能은 主로 締約國 國防長官委員會 및 統合司令部의 決定에 도움을 주는 役割을 하는데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1954年의 바르샤와 同盟 創設과 더불어 모스크에 設置된 聯合軍參謀部の 構造와 地位는 上記 1969年의 決議에 의해서도 變更

되지 않았다. 여태까지 항시 蘇聯의 高級將校에 의해 任命된 參謀總長은 同時에 統合事務局長의 職責도 兼任함으로써 그의 地位는 強化되었다. 參謀部의 任務는 戰時에 對備한 作戰計劃을 作成하여 同盟軍이 實施하는 個別的인 軍事演習에서 試驗해 보는데 있다. 그리고 이 參謀部는 常設的으로 活動하는 機關이다.

(3) 蘇聯·中共間の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에 관한條約

中共·北區間에 締結된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을 살펴보기 前에 條約의 體制로 볼 때 東歐圈 諸國間에 締結된 雙務的 防衛條約과 類型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蘇聯·中共間の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에 대해 간단히 考察해 보고자 한다.

1950年 2月 14日에 締結된 「소비에트」社會主義 共和國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間的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⁵⁰⁾은 東歐圈 諸國家間에 체결되었던 雙務條約과 같이 友好, 相互援助라는 名稱을 가지는 政治的 條約에 該當된다. 또한 이러한 條約은 戰爭을 防止하기 위한 協議條約인 同時에 戰爭에 對備한 條約이라는 意味에서 防衛條約의 性格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中·蘇間的 이 條約은 하나의 防衛條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條約은 그 全文 및 第1條에서 日本國의 侵略 또는 侵略行爲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日本國과 聯合하는 나라의 侵略의 反復을 共同으로 防止할 것을 決議한다⁵¹⁾고 함으로써 이 條約은 假想의 敵을 日本國으로 確定함과 同時에 日本과 聯合하는 第3國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防衛狀態가 發動된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 이런 意味에

서 본다면 이 條約은 東歐圈諸국이 締結하였던 初期의 旧條約의 規定과 冷似한 點이 있다. 旧條約의 防衛條項은 (全体) 独逸側의 侵略行爲이나 이와 聯合한 第3 國의 侵略을 予想하고 있었다. 勿論 그 後의 條約에는 西獨과 그의 聯合國을 對象으로 하는 防衛條項이 規定되기도 하였으나 東獨이 바르샤와 軍事同盟에 積極적으로 參與하게 됨에 따라 雙務條約의 防衛條項에는 그들의 假想의 敵을 明示하지 않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中·蘇條約이 締結된 時期가 1950年이고 보면 그 當時 東歐圈의 雙務的 防衛條約 內容이 特定の 國家를 對象으로 하는 防衛條項을 規定한 點으로 보아 日本 및 그의 聯合國을 明示하였다는 것은 추세의 當然한 歸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第1條 2項에는 어느 한 締約國이 上記의 國家로 부터의 공격으로 戰爭狀態에 들어간 경우, 相對方 締約國은 즉시 취할 수 있는 모든 手段으로 軍事的 및 기타의 援助를 提供한다고 規定하였다. 東歐圈諸國間의 雙務的 防衛條約에 의하면 提供되는 援助는 바르샤와 條約의 規定에 따라 行하여 지게 된다. 이미 위에서 본 바와같이 東歐圈諸國은 相互間에 雙務條約을 締結하였음은 勿論, 이 以外에도 이들 國家는 全部 바르샤와 條約의 締約國인 것이다. 따라서 雙務條約에서 規定한 援助義務를 바르샤와 條約의

그것과 關聯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援助義務는 바르샤와 條約 第4條 1項에 規定하고 있는데, 援助의 方法에 관해서는 援助國의 裁量에 一任하고 있다.

中·蘇間의 關係에 있어서는 兩國間에 雙務條約만 締結되었을 뿐, 雙務條約의 頂點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바르샤와 條約과 같은 多邊條約은 그들의 上位에 있지 않다. 第1條 2項의 規定에서 보는 바와같이 相對方 締約國은 즉시 援助를 提供해야 한다고 하지만 東歐圈의 雙務條約이나 바르샤와 條約의 規定에서 類推한 바와 같이 援助國의 裁量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中共이 日本國이나 그의 聯合國으로 부터 侵略당했다 하더라도 地方 締約國인 蘇聯은 援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條約은 아직도 有效하지만 現今의 中·蘇關係로 미루어 볼 때 一方 締約國이 侵略을 당했다 하더라도 他方 締約國의 援助는 全히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보아 同條文은 死文化 하였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또한 前文에서 締約國은 유엔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 極東 및 世界의 長期에 걸친 平和 및 全般的 安全을 強化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規定은 東歐圈의 新·舊 雙務條約의 類型을 模倣한 것이다. 東歐圈의 雙務條約에 의하면 유엔 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例擧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있다. 이 以外에도 條約에 따라 平和共存, 民族的 自決權, 또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등을 規定하고 있다. 中·蘇條約에는 極東이라는 限定된 地域內에서의 平和 및 安全뿐 아니라 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強化할 것을 희망한다고 함으로써 유엔의 目的을 明示하고 있다. 그리고 第5條에서 兩締約國은 “平等, 互惠, 國家主權 및 領土保全에 대한 상호존중의 原則과 相對方 締約國의 國內事項에 대한 不干渉의 原則에 따라 「소비에트」聯邦과 中國과의 經濟的 및 文化的인 運携를 강화하고 상호간 가능한 모든 經濟援助를 제공하며 아울러 經濟的으로 必要한 協力을 하기로 約束한다”고 規定하였다.

이 條項은 유엔 憲章 第2條에 規定한 유엔의 原則에 該當되는 것이다. 그러나 中·蘇條約의 上記 條文은 蘇聯 國際法 理論에 의하면 傳統的인 國際法理論과는 달리 해석되는 것이다. 즉 이 條文에서 明示한 不干渉의 原則이나 相互間의 援助는 蘇聯 國際法理論에 말하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를 意味한다. 또한 이 主義는 달리 表現한다면 “兄弟的 相互協助”를 뜻하기도 한다. 이 “兄弟的 相互協助”는 비단 經濟的, 技術的인 協助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的 解放戰爭에 적극 介入하여 援助한다는 것이다. 또한 蘇聯은 “社會主義的 援助”라는 原則下에 소비에트의

支配權下에 現存하는 共產主義的 政權의 維持를 위하여 國內問題에 干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좋은 例는 헝가리에 대한 蘇聯軍의 侵入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政變에 대한 5個 바르샤와軍의 進駐등인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볼 때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에 의한 干涉權은 正統的 國際法에서 말하는 國內問題 不干涉의 原理에 背馳되는 것이다.

(4) 蘇聯·北傀間의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에 관한條約

蘇聯과 北傀關係의 惡化期(1961 - 1965)로 볼 수 있는 1961年 7月 6日에 蘇聯·北傀間의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이⁵¹⁾ 締結되었다.

1961年 5·16 軍事革命 直後 蘇聯은 北傀의 統一方案과 南韓駐屯外軍撤収와 南北聯邦制案을 支持한다고 言明한데 反하여 北傀는 蘇聯의 平和共存論을 支持하며 社會主義 陣營의 統一과 國際共產主義 陣營의 團結強化를 強調하였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締結된 蘇聯·北傀間의 相互援助條約에는 上記한바와 같은 兩者의 意思가 充分히 反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條約의 前文을 살펴보면 東歐圈諸國間에 締結된 雙務條約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은 여러가지의 表現方式을 發見할 수 있다. 이들 締約國은 社會主義的 國際主義 原則에 立脚한 親善關係를 強化 發展시킬 것을 指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表現方式은 1960年 以後 東歐圈諸國間에 締結된 雙務條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蘇聯의 支配的 地位를 이런 形式의 用語를 使用하여 紛裝한데 不過하다. 이미 위에서 數次 指摘한 바와 같이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에 따라 蘇聯은 民族的 解放戰爭에의 介入은 勿論, 自己 陣營內에서 共產主義政權의 維持 및 離脫을 防止하기 위하여는 서슴치 않고 干涉할 수 있는 權利를 保有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親善關係의 強化 發展은 東獨의 蘇聯과의 關係에서 본 바와 같이 蘇聯에 대한 北獨의 絶對的인 隸屬을 다른 方法으로 表現한 것에 不過하다.

또한 前文에서 締約國은 「유엔」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하여 極東과 全世界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 鞏固化를 促進시킬 것을 希冀한다고 規定하였다. 이러한 規定은 이미 中·蘇間의 條約에도 明示된 바이지만 유엔 憲章 第1章의 內容을 意味한다. 이 條約은 第1條에서 유엔의 目的을 例挙하고, 第4條에서 유엔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즉 締結雙方은 平等과 國家主權의 相互尊重, 領土安全, 相互 內政 不干涉의 原則에 立脚하여 ……經濟的 및 文化的 連繫를 強化 發展시키며, 經濟 및 文化分野에서 可能한 모든 援助를 相互 提供하며 必要한 援助를 實現한데 대한 義務를 진다는 것이다. 이 條項은 中·蘇條約 第5條의 內容과 거의 同一하다. 主權平等, 相互 內政不干涉의 原則등은 蘇聯 國際法理論의 範圍內에서 해석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므로 이러한 概念에 관한 正統的 國際法理論과는 距離가 먼 것이다. 즉 「相互的 援助」라는 原則

으로써 蘇聯은 上記의 諸原則을 얼마든지 無視할 수 있는 法的 根拠를 保有하고 있다.

또한 第1條 2項에는 “締約一方이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 부터 武力侵攻을 당함으로써 戰爭狀態에 處하게 되는 境遇에 締約相對方은 지체없이 自己가 保有하고 있는 온갖 手段으로써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는 것이다.

戰時에 對備한 防衛條項의 規定으로 미루어 보아 이 條約은 政治的 條約임과 同時에 防衛條約인 것이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潛在的 侵略國에 대해서는 特定の 國家를 指名하지 않고 있다는 點에서 中·蘇條約의 規定과 區別된다.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 부터의 武力侵攻이라고 함으로써 60年代 以後 東歐圈諸國이 締結한 雙務條約의 類型을 採択하고 있다. 그리고 同條에서 締約相對方이 被侵國에 대해 地체없이 自己가 保有하고 있는 모든 手段으로써 援助하기로 되어 있으나 援助가 어떤 方法으로 提供되느냐에 관해서는 아무런 明確한 規定이 없으므로 역시 援助國의 裁量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또한 第1條 1項에서 締約雙方은 그들이 앞으로 極東과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의 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際的 活動에 參加할 것”이라고 規定함으로써 이 條約이 하나의 地域的 協定에 該

당된다는 感마저 준다. 그러나 유엔 憲章에 規定한 地域的 協定과 集團的 安全保障體制에 該當되는 雙務的 防衛條約의 差異點은 다음과 같다. 地域的 協定은 締約國에 對한 外部國家의 侵略으로 부터 當該地域을 防禦할 뿐 아니라 그 地域內의 安全을 凶謀하는데 있다. 이에 反하여 雙務的 防衛條約은 集團的인 自衛權만을 目的으로 하고 紛爭의 平和的 解決方法에 關한 規定은 없는 것이다.

第1條 1項에서 말하는 平和와 安全의 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際活動에 參加하겠다는 것은 이 條約이 地域的 協定이므로 유엔 憲章 第8章의 規定에 따라 安全保障理事會의 監督下에 隸屬되겠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蘇聯의 支配的인 性格을 여러가지 表現 形式으로 浮刻시킨 이 條約은 하나의 軍事同盟으로서 地域的 協定の 性格을 띄기 보다는 集團的 安全保障體制에 의한 蘇聯의 支配體制를 維持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 條約이 다른 條約에 比해 特有한 것으로는 韓國의 統一에 關한 第一條의 規定인 것이다. 同條에는 “締約雙方은 朝鮮의 統一이 平和的이며 民主主義的인 기초위에서 突現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解放이 朝鮮人民의 民族的 利益과 極東에서의 平和維持에 符合된다고 認定한다”고 規定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韓國의 統一이 平和的이며 民主主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蘇聯 國際法理論

에서 學論되고 있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原則에 符合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즉 이러한 것은 同條의 “解放”이라는 用語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에서 派生된 “兄弟的 相互援助”의 原則에 의하면 共產主義的 支配를 擴張하기 위한 “民族的 解放戰爭”은 틀스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統一이 平和的이고 民主主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南韓解放에 의한 赤化統一의 野慾을 은폐하는 手段에 不適當한 것이다.

이 條約의 効力은 第6條에 의하면 10年間이다. 締約一方이 期限滿了 1年前에 締約을 廢棄한데 대한 希望을 表示하지 않는다면 條約은 다음 5年間 계속하여 効力을 가지며 이와 같은 節次에 의하여 앞으로 有効期間이 延長된 것이다. 그 後 이 條約은 5年 延長되었으며 1975년에 蘇聯과 北僞間에는 1976年 7月로서 滿期되는 이 條約을 1981年까지 延長할 것을 確認하였다.

(5) 中共·北傀間の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에 관한條約

1961年 7月 11日에 締結된 中共·北傀間の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⁵²⁾은 1961年 7月 15日字의 雙方共同공유니케에서⁵³⁾ 指摘한 바와 같이 雙方은 「맑스·레닌」主義와 無産階級 國際主義原則에 依拠한 「平和共存 5原則」의 기초위에서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였다고 宣言하고 本條約은 兩國의 平和를 有效하게 保障할 것이며 兩國의 社會主義 事業을 促進할 것 이라고 強調하였다.

이 條約의 構造나 內容은 위에서 본 蘇聯·北傀間の 相互援助條約과 別로 다른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條約에 대한 法的 性格, 防衛條件 등은 이미 위에서 많은 다른 變務條約과 關聯하여 解明한 바와 類似함으로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이 條約의 規定에 있어서 特異한것만 指摘해 보기로 하겠다.

第1條의 規定에서 特異한 것은 中·蘇條約, 蘇聯·北傀條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極東”이라는 用語 代身, 그 範圍를 좀더 넓혀 “亞細亞” 및 世界平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点이다. 그리고 第2條의 防衛條項에 있어서 締約一方이 어떠한 1個 國家 또는 數個

국가들의 聯合으로 부터 武力攻撃을 當함으로써 戰爭狀態에 屐하게 되는 경우 他方 締約國은 지체없이 援助할 必要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規定은 特定の 國家를 指名하지 않았다는 面에서 이에 關한 다른 條約과 大를바가 없다. 그러나 1961年 7月 15日字의 上記 共同淸문무니케에 의하면 西獨과 日本은 東西方의 2個의 危險한 戰爭根源地이기 때문에 高度의 警惕心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強調함으로써 日本과 그 聯合國을 假想의 敵으로 한 規定이 아닌 가 하고 推測되기도 한다.

끝으로 條約의 有効期間에 關해서는 別途로 規定한바 없으며, 第 6條에 의하면 本條約은 修正 또는 廢棄의 問題에 대하여 雙方間의 合意가 없을 때에는 계속 効力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蘇聯·北 德間的 條約에 規定한 有効期間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6) 結 論

1943年 以來 蘇聯은 東歐羅巴에 있어서 그의 勢力을 維持・擴張하는 意味에서 東歐圈諸國과, 또는 東歐圈 諸國 相互間에 많은 雙務條約이 締結되었다. 이러한 條約은 例外없이 戰爭狀態에 對備한 防衛條項을 規定함으로써 名實 共히 防衛條約의 性格을 띄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蘇聯은 東歐諸國을 納羅한 多邊條約인 바르샤와 條約機構를 創設하여 이 機構가 雙務的 防衛條約의 上位에 位置함으로써 相互間 密接한 關係를 가지도록 하였다. 雙務條約과 바르샤와 條約의 規定에는 유엔 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符合되도록 締約國은 努力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條約이 유엔 憲章 第8章에 規定된 地域的 協定으로서의 役割을 擔當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條約은 外部로 부터의 侵略에 대하여 集團的 自衛權을 行使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條約은 地域的 協定으로 볼 수 없다. 또한 締約國들도 第8章에 의한 安全保障理事會의 監督에서 벗어나 自由로써 集團的 自衛權을 行使하자는 傾向으로 보아 雙務條約은 防衛條約에 該當하는 것이다.

蘇聯과 中共・蘇聯과 北越, 그리고 中共과 北越間에 締結된 友好

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등은 그 名稱이 友好 協力 및 相互援助라는 意味에서 볼 때 政治的 條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條約이 內包하고 있는 戰爭狀態에 對備한 防衛條項을 볼 때 防衛條約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條約의 原型은 東歐圈 諸國間에 締結된 防衛條約에서 由來되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蘇聯은 東歐圈 諸國의 結束 뿐만 아니라 極東에 있어서도 그의 支配的 役割을 雙務條約의 形式을 通하여 確保하자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註

1. Boris Meissner, Die interparteilichen Beziehungen in Ostblock und das Prinzip des "Proletarisch-Sozialistischen Internationalismus", in: Internationales Recht und Diplomatie, 6, Jg. 1961, S. 147 ff.
2. Heinrich Triepel, Die Hegemonie, Ein Buch von führenden Staaten (Neudruck), Aalen 1961.
3. Boris Meissner, Das trilaterale Paktsystem der Sowjetunion in Osteuropa, in: Recht im Wandel, Festschrift Hundertfünfzig Jahre Carl Heymanns Verlag KG MDCCCXV MCMLXV, S. 498.
4. M. Djilas, Gespräche mit Stalin, Frankfurt a. M. 1962, S. 225.
5. B. Meissner, Die interparteilichen Beziehungen, a. a. O. S. 147 ff: ders. Verf., Das bilaterale Paktsystem der Sowjetunion. a. a. O. S. 502.
6. H.H. Mahnke, Der Beistandspakt zwischen der Sowjetunion und der <DDR> vom 2. Juni 1964, in: Internationales Recht und Diplomatie, 10. Jg. 1965: B. Meissner, Das bilaterale Paktsystem, a.a.O. S. 503 ff.

7. A. Uschakow, Die neuen Bündnisverträge der Sowjetunion mit der Tschechoslowakei und Rumänien, in: Europa-Archiv, 1970, S. 791-800; D. Frenzke, Der neue Bündnisvertrag C SSR-UdSSR, in: Aussenpolitik, 1970, S. 406-415.
8. P. Barandon, Das System der politischen Staatsverträge, Stuttgart 1937, S. 189 u. 211 ff; B. Meissner, Das bilaterale Paktsystem, a.a.O. S. 506; Jens Hacker, Der Warschauer Pakt, in: Sowjetunion, Osteuropa-Handbuch, 1976, S. 180.
9. W. Kulski, The Soviet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Compared with the Western System, i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Bd. 44, 1950, S. 453 ff.
10. B. Meissner, Die bilateralen Bündnisverträge der osteuropäischen Länder, in: Aussenpolitik, 1967, S. 581-591; A. Uschakow, Die neuen bilateralen Pakte in Osteuropa, in: Recht in Ost und West, 1967, S. 221-231.
11. E. Menzel, Regionale Abkommen, in: Strupp-Schlochauer, Wörterbuch des Völkerrechts, Bd. 3, 2. Aufl, S. 93.

12. H.H. Mahnke, Der Beistandpakt zwischen der Sowjetunion und der DDR vom 2. Juni 1964, in: Internationales Recht und Diplomatie 10. Jg. 1965.
13. B. Meissner, Der Warschauer Pakt, a.a.O. S. 43; ders., Verf., Paktsystem in Europa, a.a.O. S. 507.
14. B. Meissner, Paktsystem in Europa, a.a.O. S. 508.
15. R. Yakemtchouk, Sowjetunion und regionale Sicherheitsabkommen, in: Osteuropa-Recht, 2. Jg. 1956, S. 192 f.; U. Scheuner, Kollektive Selbstverteidigung, in: Strupp-Schlochauer, Wörterbuch des Völkerrechts, Bd. 2, S. 240 f.
16. U. Scheuner, a.a.O.
17. B. Meissner, Sowjetunion und Selbstbestimmungsrecht, Dokumente zum Ostrecht, Köln 1962, S. 83 ff.
18. U. Scheuner, a.a.O. S. 241; B. Meissner, Paktsystem in Osteuropa, a.a.O. S. 511. 이에 反하여 横田喜三郎, 新訂 国際法, 19770, 56面은 集团的 自衛權을 正当防衛로 보고 있다.
19. A. Uschakow, Das bilaterale Paktsystem der europäischen Ostblockstaaten, die Vereinten Nationen und das <sozialistische Völkerrecht>, in: Internationales Recht und Diplomatie, 8, Jg. 1963, S. 84.

20. U. Scheuner, a.a.O.
21. B. Meissner, a.a.O. S. 511 f.
22. E. Menzel, a.a.O. S. 90 f.
23. E. Fraenkel, Regionalpakete und Weltfriedensordnung, Zur völkerrechtlichen Entwicklung der Nachkriegszeit, in: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2 (1954), S. 47: Menzel, a.a.O. S. 89 f.
24. Sozialistische Staatengemeinschaft—Die Entwicklung der Zusammenarbeit und der Friedenspolitik der sozialistischen Staaten, von einem Autorenkollektiv unter Leitung von S. Quilitzsch und J. Krüger, Berlin (Ost), S. 207 f: J. Hacker, Die Prinzipien des proletarischen und sozialistischen Internationalismus in der Sicht der DDR, in: Recht in Ost und West, 1973, S. 185-201.
25. J. Hacker, Der Warschauer Pakt, a.a.O. S. 181.
26. J. Hacker, Der Warschauer Pakt, a.a.O. S. 163 f.
27. A. Uschakow, Der Warschauer Pakt, in: Staatslexikon—Recht, Wirtschaft, Gesellschaft 11. Bd. 3, Ergänzungshand, Freiburg 1970, S. 659: J. Hacker, a.a.O. S. 181.

28. 東歐相互援助條約 (「바르샤와」條約)의 韓國語 번역文은 韓國
 外交關係資料集 <立法參考資料 第 193 号 >, 国会凶書館, 立法調
 査局, 서울 1976, 319 - 322 面 參照
29. A. Uschakow, in: Der Warschauer Pakt, Köln 1962, S.
 25 ff: J. Hacker, a.a.O. S. 167.
30. A. Uschakow, a.a.O. S. 28-31.
31. A. Uschakow, a.a.O. S. 28: J. Hacker, a.a.O. S. 168.
32. 1955 年 5 月 14 日字 中共 国檢省 및 國家副首席 Pen Teh-Huai
 의 聲明全文은, B. Meissner, Das Ostpaktsystem.
 Dokumentensammlung, Frankfurt-Berlin 1955, S. 204
 參照
33. 이 條約의 韓國語 번역文은 韓國外交關係資料集 上揭書
 281 - 282 面 參照
34. B. Meissner, Verträge der Volksrepublik china mit anderen
 Staaten, Teil 5: Verträge mit kommunistischen
 Staaten. Bearbeitet im Institut für Asienkunde
 Hamburg, von O. Weggel und W. Mohr, Wiesbaden 1971,
 S XI-XV.
35. J. Hacker, und A. Uschakow, Die Integration Osteuropas
 1961 bis 1965, Köln 1966, S. 25-28.

36. 이러한 條約의 原文은 B. Meissner, Verträge der Volksrepublik china mit anderen Staaten, a.a.O. S. 99 ff: 477 f., 526 f 參照
37. E. Menzel, Regionale Abkommen, a.a.O. S. 89-94: A. Uschakow, in: Der Warschauer Palst, a.a.O. S. 34-40.
38. D. Frenzke, Zur Rechtsstellung der "DDR" nach dem Warschauer Pakt, in: Recht in Ost und West, 1968, S. 145-150; A. Uschakow, a.a.O. S. 42 f.
39. G.I. Tunkin, Das Völkerrecht der Gegenwart. Theorie und Praxis, Berlin (Ost) 1963, S. 261.
40. A. Uschakow, a.a.O. S. 43.
41. A. Uschakow, Die militärische Intervention in der Tschechoslowakei und das Völkerrecht, in: Europa-Archiv 1968, S. 774.
42. D.A. Loeber, Die Ereignisse in Ungarn und die sowjetische Definition der Aggression, in: Europa-Archiv, 1956, S. 9357.
43. J. Häcker, Der Warschauer Pakt, a.a.O. S. 173 f.
44. J.W. Brügel, Die Sowjetunion und die Tschechoslowakei- Die völkerrechtliche Situation, in: Europa-Archiv, 1970, S. 247-255.

45. J. Hacker, Intervention im Donaauraum-Völkerrechtliche Aspekte, in: Der Donaauraum, 1969, Nr. 4, S. 208-211; ders., Verf., Der Warschauer Pakt, a.a.O. S. 175.
46. A. Latzo, Der Warschauer Pakt-Instrument zur Sicherung des Friedens, Berlin (Ost) 1972, S. 33.
47. J. Hacker, a.a.O. S. 177.
48. D. Holloway, The Warsaw Pact in the Era of Negotiation, in: Survival, 1972, No. 6. S. 278.
49. J. Hacker, a.a.O. S. 179.
50. 국문번역문은 上掲書 韓国外交關係資料案, 281 - 282 参照
51. 국문 번역문은 上掲書 韓国外交關係資料案, 282 - 284 面 参照
52. 국문 번역문은 上掲書 韓国外交關係 資料案, 285 - 286 面 参照
53. 中共·北傀間 各種條約締結現況, <海外問題 第2号>, 国会図書館 海外資料局 1977, 53 面, 参照

